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근거 신설〉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7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선희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4.
3. 회부연월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고 발표. ‘육아지원 3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조정, 단축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음.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이 아닌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편,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 해소(안 제70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하여 해당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인 사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70조의8(사무직원의 휴직)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소속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사무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휴직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공립학교의 직원과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휴직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 됨.¹⁾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는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각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각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이 가능함.

- 이에 반해,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같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인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3)에 휴직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1) 「사립학교법」 제5장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퇴직, 징계,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육아휴직 근거 규정]

구분	사립	국·공립
교원	「사립학교법」 제59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사무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국립), 「지방공무원법」 제63조(공립)

□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국·공립학교 사무직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과는 기간과 수당 지급 면에서 차이가 있음.

[국·공립학교 사무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육아휴직 비교]

구분	국·공립학교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 교원	사무직원
기간	3년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가능	1년 이내(+6개월)
육아 휴직 수당	휴직 0~3개월 : 250만원 휴직 4~6개월 : 200만원 휴직 7개월 이후 : 160만원	각 사립학교 정관 외에 근거 규정 없음

□ 이로 인하여 실제 사립학교 교직원(유치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직원 수는 85명으로 전체 직원의 0.7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육아휴직 사용 교원은 1,533명으로 사학연금가입자 전체 교원의 1.9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⁴⁾

4) 국회입법조사처,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NARS현안분석』 제350호, 2025. 4. 7.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교원 수	사용자 수	비율	직원 수	사용자 수	비율
2019	92,017	1,563	1.70	12,435	67	0.54
2020	88,531	1,541	1.74	11,709	85	0.73
2021	85,253	1,567	1.84	11,242	84	0.75
2022	82,632	1,612	1.95	11,119	96	0.86
2023	79,941	1,588	1.99	10,989	94	0.86
2024	77,135	1,533	1.99	10,741	85	0.79

주: 1. 교직원 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으로 산출

2. 대학교의 경우 교원의 평균 연령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직원과의 육아휴직 사용률 비교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현황 자료에서 제외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이에 개정안은 그간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해당 제도를 법률상 권리로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 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육아·출산 등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안 제70조의8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한 것 외의 사항 중 (제2항)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휴직기간과 그 이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

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⁵⁾

- 아울러, 개정안은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근거만 규정하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률에서 육아휴직 근거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한 사항(관련 수당 포함)을 규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규정⁶⁾과 유사

5)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 3.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교원 간 육아휴직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위임에 따라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학교 유형별로 재원 확보 체계가 상이하므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의 부담 가능 여부,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교 유형별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재원 현황>

구분	교원		직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유	국고(국립), 보통교부금(공립)	보통교부금, 자체 재원	국고(국립), 보통교부금(공립)	자체 재원(원비 등)
초		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자체 재원		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자체 재원
중				
고				
고등 교육 기관*	국고(국립), 지방재정(공립)	자체 재원 (등록금, 기부금 등)	국고(국립), 지방재정(공립)	자체 재원 (등록금, 기부금 등)

자료:교육부

- 참고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64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휴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092호)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국가부담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